

의안번호	2200557
의 퇴 인	이학영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.
추계번호	24B1009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 제2호 후단 신설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“토양오염물질”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<u>이 경우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는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다.</u>	의무규정
2	안 제3조(적용 제외) 제1항 삭제	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→ 삭제	
3	안 제5조(토양오염도 측정 등) 제5항	환경부장관은 상시측정,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를 <u>누적적으로 관리하고</u> ,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	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 제2호 후단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조(적용 제외) 제1항 삭제	
3	안 제5조(토양오염도 측정 등) 제5항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고,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하고, 그 측정·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·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정의(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) 및 적용제외(안 제3조제1항)

-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고,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하게 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마련, (지역)토양보전기본계획의 변경수립 및 이행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방사성물질 유입 시기 및 오염 토양의 위치, 면적, 오염도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□ 토양오염도 측정 등(안 제5조제5항)

- 환경부장관이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상시 측정 및 정밀 조사하고 그 측정·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·공개하게 될 경우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환경부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 대상 지역, 시료 채취 지점의 수, 오염물질별 시료 분석 비용 등을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 현재 환경부는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5조(토양오염도 측정)에 따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운영관리 사업을 수행 중이며, 토양측정망·토양오염실태조사·토양오염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 중임¹⁾

[표 1] '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운영관리'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2022	2023	2024
829	635	561

주: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(정보화)(2031-332)의 내역사업임
자료: 환경부

※ [참고자료] 토양지하수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개요

1) (대국민망) sgis.nier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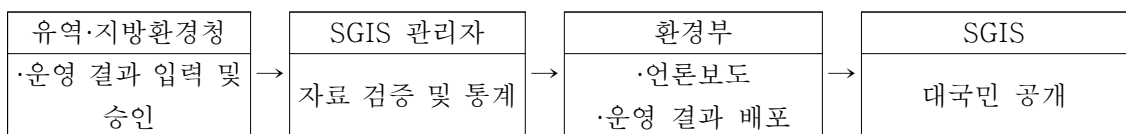
[참고자료]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개요²⁾

- (구축 목적) 전국의 토양 및 지하수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대국민 공개함으로써 토양·지하수 보전정책 실효성 제고
- (구축 연도) 2005년
- (운영 기관) 국립환경과학원
- (운영 현황) 토양·지하수 관련 시스템 7개 중 개정안의 토양오염 관리와 관련하여 3개 시스템 운영중
 - (시스템) 토양측정망, 토양오염실태조사, 토양오염이력관리

□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내 토양오염 관련 시스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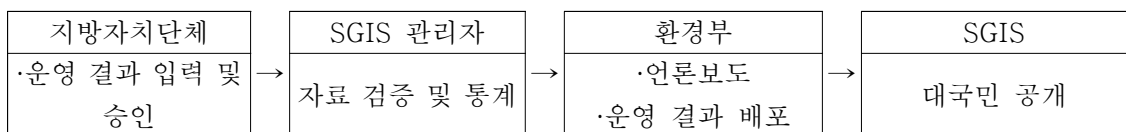
1. 토양측정망 시스템

- 토양측정망(유역·지방환경청) 운영 결과 입력
-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대국민 공개



2. 토양오염실태조사 시스템

-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 결과 입력(시·군·구) 및 승인(시·도)
-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 결과 대국민 공개



2) 환경부 제출자료

3. 토양오염이력관리시스템

인허가 및 행정명령	자료 조사 및 DB 구축	데이터 품질관리	시스템 관리 및 운영
각 지방자치단체 · 특정시설 허가관리 ·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, 토양정밀 조사 업무 관리 · 오염토양 행정명령 및 이행관리 · 이력관리시스템 활용 및 정책 환류	한국환경공단 · 광역·기초 지자체의 오염토양 행정명령 보고서, 특정시설 및 잠재오염원 현황 정보 수집 및 갱신 ▶ · 이력관리시스템 홍보 등 협력체계 지원	한국환경공단 · 조사 자료 검증 및 품질관리 · 오류 자료 수집기관 재확인 및 보정 처리 ▶ · 검·보정 완료된 최종 자료 과학원 제공	국립환경과학원 · 토양오염이력정보 업무망 및 대국민시스템 구축·운영 · 의사결정지원 기반 시스템 기능 확대 ▶ · 이력관리정보 공동 활용방안 마련 및 총괄 지원

□ 토양측정망, 토양오염실태조사 자료 검증

1. 운영 목적 및 관련 규정

- 토양측정망: 국내 토양오염의 배경농도와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보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
 - ※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5조 및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
- 실태조사: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및 오염토양의 정화
 - ※ 「토양환경보전법 제5조」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

2. 추진체계

업무	정도관리 및 교육	시료채취 및 분석	결과보고 및 SGIS 입력	자료검증 (2-3회)	자료확정	대국민 공개
측정망	과학원→환경청 전년 3월-10월	⇒ 환경청 전년 3월-12월	⇒ 환경청→환경부·과학원 1월말	과학원	과학원 → 환경부	환경부·과학원
실태조사	국립보건연구원→시군구 전년 시료채취 이전	⇒ 시군구·국립보건연구원 전년3월-10월	⇒ 시군구→시도→환경부·과학원 전년 12월/1월	⇒ 4월-7월	⇒ 8월말	⇒ 12월

3. 결과검증

운영내용		토양측정망	토양오염실태조사
개요	조사지점	운영기관별·지목별·측정목적별로 고정된 2,000지점 격년조사 (짝수해+홀수해)	시도별·오염원별로 매년 다른 지점을 2,000지점 이상 선정하여 조사
	조사항목	지목에 따라 설정	오염원 및 토지사용이력 등을 고려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
‘21 결과 검증	대상지점	1,000지점(홀수년)	2,587지점(3,392개 시료)
	기본정보 검토	지목별 조사항목 일치, 시스템-공문서 일치, 정량한계·유효자리 표기오류 등	오염원별 분류 일치, 시스템-공문서 일치, 정량한계·유효자리 표기 오류 등
	데이터 검토	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및 오염항목별·지목별 기준 적용 오류 ② 동일지점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한 특이 측정치 검토 ③ 지각기원 토양오염물질(구리, 니켈 등)이 불검출된 지점 확인 ④ 자연배경지점 [†] ·오염영향지점 [‡] 결과검토 [†] 국내 자연배경농도와 농도 비교 [‡]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70% 초과 여부	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및 오염항목별·지목별 기준 적용 오류 ② 오염원 및 토지사용이력 등을 고려한 특이측정치 검토 ③ 지각기원 토양오염물질(구리, 니켈 등)이 불검출된 지점 확인 ④ 조치사항(정밀조사 여부, 정화 명령 등) 확인
통계분석		배경지역 오염물질 농도 분포, 지목별 오염도 및 연도별 농도 장기 추이 등	지역별 오염물질 초과율, 오염기준 초과지역 오염원별 구성 등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3735	powerreset@nabo.go.kr